

실습사무직 임용에 관한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8.6.15		16		
2	2019.6.17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실습사무직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실습사무직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실습사무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실험·실습 및 강의준비 등 소속 학부(과) 업무에 관하여 교수를 보좌하고, 학사업무를 보조하거나,
2. 행정부서에서 실험·실습 또는 교육·연구 및 학사, 행정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임용자격 및 타 기관 전임금지 등) ① 실습사무직은 학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로 임용한다.

- ② 실습사무직으로 임용된 자가 실험·실습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때에는 해당 학부(과) 전공분야와 동일 이수자라야 한다. 단, 학부(과)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거나 행정부서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임용할 수 있다.
- ③ 실습사무직은 타 기관의 전임직으로 종사하거나 주간대학 및 일반대학원에 재학할 수 없다.

제4조 (임용) 실습사무직은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의 제청에 의거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조 (임용기간) 실습사무직의 임용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단, 임용기간 만료 후 소속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의 근무평정 및 사무처장의 면접심사를 통하여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는 자는 총장의 승인에 의거 재임용할 수 있다.

제6조(호봉승급) ① 실습사무직은 최초 임용 시 20호봉을 부여하며, 한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 ② 실습사무직은 평가 결과 등 내부지침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상위호봉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제7조 (보수) 실습사무직의 보수는 본 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복무) 실습사무직의 복무는 본 대학교 직원 취업규칙에 준한다.

제9조 (정년) 실습사무직의 정년은 본 대학교 교직원 정년퇴직 규정에 준한다.

제10조 (호칭) 실습사무직의 호칭은 행정사무직으로 한다.<신설 2018.6.15.>

제11조(평가) ① 실습사무직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매년 1회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 ② 실습사무직의 근무평정 방법은 직원근무평정에 준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6.17>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에 의거 기존 「조교 및 조수 임용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적용방법) 2019년 3월 1일부로 모든 실습사무직의 호봉승급 기준일을 매년 3월 1일로 변경하며, 기존 15단계 호봉에서 20단계 호봉으로 확대한다. 기존 1호봉, 가1호봉, 가2호봉은 각각 8호봉, 7호봉, 6호봉으로 변경한다.